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書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7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7월 13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총무과 소관 위임사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

나.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사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사무"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현지성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

다.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사무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 사무가 국가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시·군에 위임

## 5. 검토의견

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총무과 소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3제2항에 의회사무처 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

현재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65명이며 임용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되는 별정·기능·계약직 공무원은 총정원의 37%에 해당하는 24명임.

의회사무처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일반직	별정 기능 합계	별정직			기능직				
				소계	7급	9급	소계	속기	사 진 총 방	운전	사무
정원	65	41	24	1	1	-	23	8	3	3	9
현원	65	41	24	2	1	1	22	8	3	3	8

검토결과 동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다만, 임용권과 함께 징계권한도 임용권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며 또한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용권이 위임되는 직원중 6급이하직원의 경징계업무에 대한 사무위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함.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관련사무의 시·군위임에 관한 사항(기업지원과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관련사무는 현지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추가위임되는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사무와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그동안 위임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이번에 위임하는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사무 및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초 위임시 위임하지 아니한 사유와 시·군별 등록업소 현황 및 업무량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

다.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 사무의 위임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  
(수질관리과 소관)

동 사무의 위임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의 사무로 권한위임됨에 따라 위임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에 따른 시·군사무의 증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